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84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염태영 · 정준호 · 이연희
손명수 · 박홍근 · 김우영
이강일 · 윤종오 · 김승원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계약서에 명시 또는 고지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법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